

RESEARCH ARTICLE

Geographical Indications as a Strategic Asset: An Economic, Cultural, and Normative Analysis of Korea's GI Policy

Chaeyi Shin

Ph.D. Student in Public Policy Management, KDI School,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Chaeyi Shin (nivea0824@naver.com)

ABSTRACT

Geographical indications (GI) are a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link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o product quality and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an economic asset. Recently, however, GI has evolved beyond trade negotiations into the domain of cultural diplomacy, becoming intertwined with cultural identity and national image, while also functioning as an arena for international normative competition over protection standards.

This study conceptualizes GI as a composite agenda of intersecting economic interests, cultural identity, and normative order, and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Korea's GI policy in trade negotiations and cultural diplomacy. It reviews the divergent GI strategies of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emerging economies under the WTO-TRIPS regime, and empirically analyzes how GI functions as both a trade asset and as a culturally charged international issue by examining the Korea-EU FTA negotiations and the kimchi origin dispute.

The analysis reveals that competition over GI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normative judgments on legitimate protection systems, whereas Korea's strategic use remains constrained by fragmented governance and reactive policy approaches. The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for managing GI as an integrated asset combining economic, cultural, and normative dimensions.

KEYWORDS

Geographical Indications (GI), Cultural Diplomacy, Trade Strategy, Normative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 Governance, TRIPS Agreement, Non-Agricultural GI

Open Access

Received: January 06, 2026

Revised: January 12, 2026

Accepted: March 06, 2026

Published: March 30, 2026

Funding: The author received manuscript fees for this article from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2026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원저

전략 자산으로서의 지리적 표시: 경제·문화·규범 차원에서 본 한국 GI 정책 분석

신채이

KDI School 정책학 박사과정

교신저자: 신채이 (nivea0824@naver.com)

차례

1. 서론

2. 지리적 표시(GI)의 국제적 제도와 논쟁 구도
 - 2.1. WTO-TRIPS 체제의 등장과 한계
 - 2.2. EU의 Sui generis 보호체계와 확산 전략
 - 2.3. 미국의 상표 중심 접근과 견제 전략
 - 2.4. 신흥국의 전략적 대응과 활용

3. GI의 다차원적 기능과 한국의 경험
 - 3.1. 경제적 차원
 - 3.2. 문화적 차원
 - 3.3. 규범적 차원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국문초록

지리적 표시(GI)는 특정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특성과 상품의 품질을 연계하는 지식재산 제도로서,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GI는 통상 협상의 교섭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및 국가 이미지와 결부되며 문화외교적 함의를 지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 수준과 범위를 둘러싼 국제 규범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 GI를 경제적 이익, 문화적 정체성, 규범적 질서가 교차하는 복합 의제로 개념화하고, 한국의 GI 정책이 통상 협상 및 문화외교에서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WTO-TRIPS 체제 이후 EU·미국·신흥국의 상이한 GI 전략을 검토하고, 한-EU FTA 협상과 김치 중주국 논쟁 사례를 중심으로 GI가 통상 교섭 자산이자 문화외교적 쟁점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GI를 둘러싼 경제적·문화적 경쟁은 궁극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어떤 GI 보호 체계가 정당한가”라는 규범적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분절적 거버넌스와 사후 대응적 정책으로 인해 전략적 활용에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GI를 경제적 이익, 문화적 자산, 규범적 영향력이 결합된 정책 자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지리적 표시, 문화외교, 통상전략, 규범경쟁,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거버넌스, TRIPS 협정, 비농산물 GI

1. 서론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는 특정 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기원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제도이다. 전통적으로 GI는 농식품 분야에서 지역경제 보호와 품질 보증의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단순한 인증 체계를 넘어 국가 간 협상과 외교 전략에서 활용되는 제도적 자산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통상 질서에서 GI가 지니는 전략적 의미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GI는 프리미엄 브랜드 효과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시장 접근 협상에서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기능한다. 문화적 차원에서 GI는 특정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문화 기원과 정통성을 둘러싼 국제 담론을 형성한다. 규범적 차원에서 GI는 ‘어떤 가치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둘러싼 제도 경쟁의 장이 된다. 이처럼 GI는 경제·문화·규범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복합 자산으로서, 소프트파워를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려는 국가들에게 특히 전략적 활용 가치가 크다.

한국의 경우 GI의 다차원적 성격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전환점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한국은 EU의 광범위한 GI 보호 요구에 직면하며, GI를 통상 협상의 핵심 의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어 이른바 ‘김치 종주국 논쟁’은 GI가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적 이해를 동시에 포괄하는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두 경험은 한국이 GI를 단순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넘어 외교적·통상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한 계기였으나, 동시에 제도 도입의 후행성, 산업과의 연계 부족, 그리고 부처별 법적 근거와 정책 목표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계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 연구의 논의 범위와도 연결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GI의 경제적 효과나 국가별 GI 제도의 운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도 도입 및 FTA 이행 과정을 다룬 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나, GI를 외교·통상 자산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져 온 GI 정책 과제를 경제·문화·규범이 교차하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며, 다음의 핵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한국은 왜 GI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을 겪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U·미국·신흥국의 GI 전략을 비교하여 국제 규범 경쟁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러한 국제적 맥락 속에서 한국 GI 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진단한다. 특히 한국이 직면한 제약이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분절적 거버넌스와 사후 대응적 정책 경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WTO, EU,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등 국제기구의 공식 문서와 주요 FTA 협정문, 국내외 학술 문헌을 분석하여 GI 제도의 국제적 전개 양상과 규범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 환경이 한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 사례로는 한-EU FTA 협상 이행 과정과 김치 종주국 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제도와 논쟁 구도

2.1. WTO-TRIPS 체제의 등장과 한계

GI는 단순한 상품의 원산지 표시를 넘어, 지역적 특성과 품질·명성을 결합한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국제 무역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특히,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은 GI를 상표·특허·저작권과 함께 보호해야 할 권리로 규정하며, 각 회원국이 최소한의 GI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협정 제22조는 GI를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서 그 품질·명성·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출처에 기인하는 표시”로 정의하고, 소비자 혼동 방지와 부정경쟁 금지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 보호 의무를 규정한다. 제23조는 와인·증류주에 대하여 혼동 여부와 무관한 절대적 보호를 부여하며, 제24조는 이미 상표로 등록되었거나 보통명칭화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¹⁾

이처럼 TRIPS 협정은 GI 보호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보호 수준의 확대를 두고는 회원국 간 입장 차가 뚜렷했다. 먼저 EU는 와인·증류주에 한정된 강화된 보호 수준을 농산물과 식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다자적 GI 등록부를 통해 일원화된 방식으로 보호할 것을 제안하였다.²⁾ 이에 대해 미국·호주 등 이른바 “신세계(New World)” 국가들은 기존 상표제도와 중복, 자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 사실상의 농업 보조금 효과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다.³⁾ 이러한 대립은 2000년대 초반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GI 논의는 WTO 차원에서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도 표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그뤼예르(gruyère) 치즈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유럽에서는 GI로 엄격히 보호 받는 ‘그뤼예르’가 미국 내에서는 보통명칭(generic term)으로 인식된다고 판단하며, EU 생산자들의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⁴⁾

이 사건은 단순한 제도적 충돌을 넘어, 상이한 GI 보호 체계가 장기간 병존해 온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은 독립적인 GI 보호 제도를 두지 않고 상표 중심의 접근을 취해 왔으며, 그 결과 유럽 원산지 명칭들이 미국 시장에서 오랜 기간 자유롭게 사용되며 보통명칭으로 정착되었다. 반면 유럽 소비자에게 ‘그뤼예르’는 특정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문화적 자산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GI를 둘러싼 분쟁은 법제도의 문제인 동시에, 어떤 기준과 가치가 보호의 정당성을 갖는지를 둘러싼 규범적·문화적 인식의 충돌을 반영한다. 이는 GI 논쟁이 단순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넘어 규범권력 경쟁의 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2.2. EU의 Sui generis 보호체계와 확산 전략

EU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GI를 보호하는 지역으로서, 독자적인 sui generis 법제를

1)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Section 3: Geographical Indications (Arts. 22-24),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4b_e.htm>, 검색일: 2026. 1. 5.

2) Kal Raustiala & Stephen R. Munzer, “The Global Struggle over Geographic Indic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8 No.2(2007), pp. 339, 343; G. E. Evans & Michael Blakeney,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fter Doha: Quo Vadi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9 No.3(2006), pp. 577-578.

3) Kal Raustiala & Stephen R. Munzer, supra note 2, p. 351.

4) Interprofession du Gruyère v. U.S. Dairy Export Council, 61 F.4th 407 (4th Cir. 2023).

발전시켜 왔다. EU는 치즈, 와인, 햄 등 농산물 및 식품 특산품의 명칭을 일찍부터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등록·보호해 왔으며, 이를 원산지명칭(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과 지리적표시(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의 이원적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PDO는 원료의 생산부터 가공·제조에 이르는 전 공정이 특정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보호되는 반면, PGI는 원료의 일부가 외부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생산 공정이 해당 지역과 실질적으로 결부되어 있을 경우 보호가 가능하다. 예컨대 파르마산 햄(Prosciutto di Parma)은 사육부터 숙성까지 모든 공정이 파르마 지역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PDO로 보호되는 반면, 뉘른베르거 소시지(Nürnberger Bratwürste)는 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더라도 지역 내 제조 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PGI로 보호된다.

EU는 이처럼 전통성과 지역 연계성이 강한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호를, 생산 구조가 보다 유연한 품목에 대해서는 완화된 보호를 병행하는 이원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체계적으로 보호해 왔다. 이러한 제도적 유연성은 GI를 단일한 인증 제도가 아니라 보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규범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적 축적을 배경으로 최근에는 보호 범위를 전통 공예품과 산업제품 등 비농산물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제도 확장에는 EU 내부 공예 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더불어, 2020년 체결된 EU-중국 GI 상호보호협정과 같은 대외 통상환경의 변화 역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⁷⁾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뿐 아니라 공예품·산업제품 등 비농산물 GI의 보호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는 EU가 기존의 농식품 중심 GI 체계를 넘어 보호 대상의 외연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EU의 GI 전략은 자국 내 보호 확대에 그치지 않고, FTA를 통해 자국의 GI 규범체계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EU는 협정 체결 시 상호 보호할 GI 목록을 부속서에 합의된 형태로 등재하고, 협정 발효와 동시에 해당 GI를 일괄적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목록교환(list exchange)’ 방식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국 내에서 개별 출원이나 심사 절차 없이도 신속하고 포괄적인 GI 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GI를 통상 협상의 핵심 교섭 자산으로 기능하게 한다.

이러한 전략의 실질적 효과는 EU가 체결한 주요 FTA에서 상호 보호되는 GI 품목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1> 참조). 최근 EU가 체결한 FTA들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100개 이상의 EU GI를 상대국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통상 협상에서 GI가 단순한 원산지 표시를 넘어 핵심 협상 의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EU는 자국 농식품의 시장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자국의 GI 보호체계를 국제 통상 규범의 일부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5)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3/2411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023/2411 (27 October 2023),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411/oj>>, 검색일: 2026. 1. 5.

6) 김영모·전정화, “지재권 국제논의 및 통상협상 지원 기반 마련 연구 - 2024 「유전자원권 IP조약」 및 GI 보호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59-89면.

7) John A Clarke, “Crossing the River by Feeling the Stones—The China-EU Agreement on Geographical Indications”, Modern Diplomacy, <<https://moderndiplomacy.eu/2024/07/11/crossing-the-river-by-feeling-the-stones-the-future-of-the-china-eu-agreement-on-geographical-indications/>>, 검색일: 2026. 1. 5.

<표1 주요 EU FTA별 지리적 표시(GI) 상호 보호 품목 수 및 발효 시기>8)

FTA명	GI 보호 품목 수		발효 시기
	EU	상대국	
EU-한국 FTA	162	64	2011년 7월
EU-일본 EPA	263	112	2019년 2월
EU-싱가포르 FTA	196	196	2019년 11월
EU-베트남 FTA	169	39	2020년 8월
EU-멕시코 FTA(현대화 협정)	568	약 20(잠정)	서명 완료, 비준 대기 중(미발효)

출처: 각 EU FTA 협정문의 GI 부속서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미국의 상표 중심 접근과 견제 전략

이에 반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GI에 대해 상표법 중심의 접근을 취해왔다. EU와 같은 독립된 GI 등록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GI는 주로 상표법 내의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⁹⁾ 또는 단체표장(collective mark)¹⁰⁾ 제도를 통해 보호된다. 이러한 접근의 배경에는 치즈·와인 등 다수의 GI가 이미 보통명칭으로 정착된 미국 시장의 특성이 있다. 파르메산(Parmesan), 모차렐라(Mozzarella), 샴페인(Champagne) 등은 특정 지역을 출처로 한 제품만을 가리키지 않고 보통명칭처럼 사용되므로, 이를 GI로 제한할 경우 자국 생산자의 피해가 크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따라서 미국은 WTO 협상에서 EU식 GI 강화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GI 보호 범위의 확산을 견제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이 체결하는 무역협정에도 반영되어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 주도의 주요 협정들은 GI에 관한 포괄적 조항을 두지 않거나 TRIPS 수준의 원칙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EU의 공세적 GI 확산에 대응하고 자국 내 보통명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GI 지정에 관한 절차적 제약을 협정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의 지식재산권 장은 새로운 GI를 지정할 때 △이의신청 △보통명칭 및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¹¹⁾ 이로 인해 회원국이 EU와 GI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USMCA 회원국 내에서는 ‘Cheddar’, ‘Mozzarella’ 등 부속서에 보통명칭으로 명시된 용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다.¹²⁾ CPTPP 역시 TPP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장했던 절차적 접근을 상당 부분 계승하여, 각국이 제3국과 GI 협정을 체결할 경우 사전 통보 및 이해당사자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은 활발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설립된 보통식품명칭협의체(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CCFN)는 유럽의 GI 공세에 맞서

8)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EU-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EU-Mexico Agreement(현대화 협정) 등 각 협정문의 GI 부속서 및 관련 조항: European Commission, “Negotiations and agreements”,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검색일: 2026. 1. 5.

9) 상품이 특정 기준(원산지, 품질, 생산방식 등)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공인기관이 보증할 때 사용하는 상표(예: “Woolmark(울마크)” 로고).

10) 특정 협회·조합 소속 생산자들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예: 스위스 치즈 생산자 협회 마크).

11)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Article 20.19 (Geographical Indications) (2020)”, USTR,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20-Intellectual-Property-Rights.pdf>>, 검색일: 2026. 1. 5.

12) USTR, supra note 11, Annex 20-A (Geographical Indications).

“Parmesan, Feta, Asiago 등은 특정국이 독점할 수 없는 글로벌 보통 명칭”이라는 논리를 국제 포럼과 각국 정부에 전파해왔고,¹³⁾ 이들의 활동은 실제로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예컨대 미국 유제품수출협회(USDEC), 전미낙농협회(NMPF)와 협력하여 2024년 칠레 정부와의 합의에 도달, EU-칠레 무역협정에서 GI 보호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Parmesan 등 주요 명칭은 칠레 시장에서 계속 보통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¹⁴⁾ 또한 2025년 미 의회에서 재발의한 SAFETY Act(Safeguarding American Food and Export Trade Yields Act)는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와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향후 통상 협상에서 보통명칭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CCFN은 이를 GI 남용에 대응하는 자국 산업계의 중요한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사례들은 GI를 둘러싼 논쟁이 산업계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정책 행위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EU는 FTA를 통해 GI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확산시키는 반면, 미국은 GI를 상표 제도의 일부로 간주하며 보통명칭 보호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 차이는 국제 GI 규범 경쟁의 핵심 갈등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2.4. 신흥국의 전략적 대응과 활용

1990년대 TRIPS 협상 당시 GI를 둘러싼 논의는 주로 EU와 신세계(미국·호주) 간의 이해 충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 외 국가는 상대적으로 주변적 위치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아시아 및 중남미의 신흥국들이 자국 농산물과 전통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GI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 GI 거버넌스는 점차 다극적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WIPO(2024)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은 9,785건, 베트남은 2,133건, 터키는 1,507건의 GI를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에서 보호되는 GI의 90% 이상이 자국 GI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표 2> 참조), 신흥국들이 GI를 단순히 외국 GI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자국의 문화적·경제적 자산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⁶⁾

특히 중국은 1999년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 이후, 차(茶)·백주·장류·과일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GI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기준 중국에서 보호되는 GI는 9,785건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 중 96.2%인 약 9,400건이 중국 자국 GI이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이 단기간 내 방대한 GI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GI를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체계화해 왔음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농촌 활성화 및 지역경제 가치 창출과 연계하여 GI의 경제적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¹⁷⁾ GI 제품의 등록·사용·감독에 관한 규정 정비와 국제 협력 확대 등 제도의 질적 고도화에도

13) 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CCFN), “About Us”, CCFN, <<https://www.commonfoodnames.com/about-us/>>, 검색일: 2026. 1. 5.

14)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NMPF), “Landmark Agreement Secures U.S. Exporters’ Rights to Use Common Names in Chilean Market”, NMPF, <<https://www.nmpf.org/landmark-agreement-secure-s-u-s-exporters-rights-to-use-common-names-in-chilean-market/>>, 검색일: 2026. 1. 5.

15) 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CCFN), “Bipartisan Group of Lawmakers Reintroduce Bill to Protect Common Names”, CCFN, <<https://www.commonfoodnames.com/bipartisan-group-of-lawmakers-reintroduce-bill-to-protect-common-names/>>, 검색일: 2026. 1. 5.

16)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4”, WIPO, 2024, pp. 164, 170-171.; Delphine Marie-Vivien,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ASEAN countries: Convergences and challenges to awakening sleeping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23 No.3-4(2020), pp. 328-349.

17) Xinhua News Agency, “China issues GI protection, application plan for 2021-2025 period”, Xinhua, <<https://english.news.cn/20220121/f382af0c9ee4462b9b6d1c56963678e3/c.html>>, 검색일: 2026. 1. 5.

주력하고 있다.¹⁸⁾

<표2 주요 신흥국의 GI 현황 및 자국 GI 비중 (2023년)>

국가	GI 총계(건)	자국 GI 비중(%)	자국 GI 수(추정치)
중국	9,785	96.2	약 9,400
베트남	2,133	91.5	약 1,952
터키	1,507	99.8	약 1,504
인도	530	93.6	약 496
브라질	119	92.4	약 110

자국 GI 수는 WIPO (2024), pp. 164, 170-171을 바탕으로 저자가 산출한 추정치임.¹⁹⁾

참고(총계): EU 5,376건, 미국 763건, 한국 643건.

이러한 국내 GI 정책의 축적은 중국이 GI를 대외 통상·외교 협력의 대상으로 확장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대표적으로 2021년 발효된 중국-EU GI 상호보호협정은 양측이 각각 244개의 GI를 상호 보호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GI 단독 협정으로,²⁰⁾ 중국이 기존의 규범 수용자에 머물기보다는 국제 GI 보호 체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중국이 국제 GI 규범의 적용과 확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외에도 아시아 신흥국들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인도는 다르질링 차(Darjeeling Tea)를 자국 최초의 GI로 등록한 이후, 지역의 역사성과 생산지 서사를 결합한 국가 브랜드 전략을 전개해 왔다.²¹⁾ 태국은 자스민 쌀(Thai Hom Mali Rice)을 대표적 GI 품목으로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²²⁾ 베트남은 부온마투엣 커피(Buon Ma Thuot Coffee)를 GI로 등록함으로써 품질·전통·지역 이미지를 결합한 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²³⁾ 이러한 사례들은 신흥국들이 GI를 자국의 산업 구조와 문화적 자산을 연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남미 국가들 또한 농산물과 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 GI를 국가 브랜드 전략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다. 브라질은 카사사(Cachaça) 증류주를 GI로 등록하여 세계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으며,²⁴⁾ 콜롬비아는 카페 데 콜롬비아(Café de Colombia)를 GI로 보호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를 이끌고 있다.²⁵⁾

18) Zhigang Zhu & Paul Ranjard, "CNIPA publishes sorely needed draft rules on protection of GI products", IAM Media, <<https://www.iam-media.com/article/cnipa-publishes-sorely-needed-draft-rules-protect-ion-of-gi-products>>, 검색일: 2026. 1. 5.

19) WIPO, supra note 16.

20) John A Clarke, supra note 7.

21) A Subramani, "GI tag: TN trails Karnataka with 18 products", The Times of Ind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GI-tag-TN-trails-Karnataka-with-18-products/articleshow/6458268.cms>>, 검색일: 2026. 1. 5.

22) Chuthaporn Ngokkuen & Ulrike Grot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ailand",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Vol.19 No.2(2012), pp. 97-98.

23) People's Army Newspaper Online, "Vietnamese coffee brand promoted in world market", People's Army Newspaper, <<https://en.qdnd.vn/economy/special-reports/vietnamese-coffee-brand-promoted-in-world-market-549916>>, 검색일: 2026. 1. 5.

24) Cleiton Braga Saldanha et al., "Overview of Brazilian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Experience of Cachaça Indications of Procedure",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16 No.3(2023), pp. 128-129.

25) Xiomara F. Quiñones-Ruiz et al., "Can origin labels re-shape relationships along international supply chains? - The case of Café de Colombi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Vol.9 No.1(2015), pp. 427-428.

종합하면, 신흥국들의 GI 전략은 TRIPS 체제 초기의 수동적 제도 수용을 넘어, GI를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국가 브랜드를 관리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GI 등록 확대와 제도 운영 경험은, 이들이 국제 GI 질서에서 단순한 규범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자국의 이해를 반영한 입장을 형성·표명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GI의 확산과 규범화가 더 이상 유럽 중심의 구도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I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TRIPS 체제 이후 EU의 공세적 확산 전략, 미국의 보통명칭 보호 전략, 그리고 신흥국의 전략적 활용이 경쟁하는 다극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경쟁이 단순한 제도 차이를 넘어 지속되는 이유는, GI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규범적 정당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복합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GI가 지니는 제도적 의미를 경제·문화·규범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의 GI 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형성되었으며 어떤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3. GI의 다차원적 기능과 한국의 경험

국가 간 외교·통상 협상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뿐 아니라, 문화적 매력에 기반한 소프트파워, 그리고 가치와 규범을 통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규범 권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GI는 이러한 다차원적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제도로서, 단순한 지식재산권을 넘어 외교·통상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GI는 특정 상품의 품질과 명성을 해당 지역의 기원과 결부시킴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상품에 내재된 역사·전통·문화적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가시화하는 소프트파워의 매개 장치로 작동한다. 나아가 GI가 국제 협정이나 무역 규범을 통해 보호·확산되는 과정은, 각국이 자국의 품질 기준과 문화적 가치를 국제 규범 속에서 정당화하고 조율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규범 권력의 행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GI는 경제적 이익, 문화적 정체성, 규범적 정당성을 동시에 포괄하며, 국가의 외교·통상 역량을 다층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자산으로 이해될 수 있다.

3.1. 경제적 차원

3.1.1. GI의 경제적 의미

GI는 특정 지역성과 상품성을 제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하는 경제적 자산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EU 내 GI 관련 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748억 유로에 달하며, 와인과 주류를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약 771억 유로로 확대된다. 이러한 GI 제품은 동일 품목의 비(非)GI 제품에 비해 약 2.1배의 가격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품질 보증 및 신뢰의 제도화가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²⁶⁾

GI의 경제적 효과는 개별 상품의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생산 구조와 고용, 관광 산업으로까지 확산된다. 예컨대 프랑스의 ‘삼페인’과 이탈리아의 ‘파르마 햄’은 수십 년에 걸친 GI

26)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tudy on economic value of EU quality schemes, geographical indications (GI) and traditional specialties guaranteed (TS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1, pp. 2-3.

기반 성장과정을 통해 지역산업을 견인해 왔으며, 고부가가치 수출품이자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GI는 단일 농가나 소규모 생산자에게 집단적 마케팅 효과를 제공하고,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하기도 한다.²⁷⁾

한국에서도 GI의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는데, 보성녹차가 대표적인 GI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02년 국내 1호 GI로 등록된 보성녹차는 등록 이후 1년 만에 녹차 재배면적이 72ha 늘고, 관련 농가의 고용이 증가했다. 상품 가격 역시 우전 등급 고급 녹차의 경우 2001년 100g당 4만 원에서 1년 뒤 4만 5천~10만 원대로 상승하였으며, 세작 등 다른 등급²⁸⁾에서도 유사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 또한 '보성녹차'라는 지역 기반 상품 이미지가 정착되면서 연관 제품 개발과 관광 산업의 동반 활성화도 이어졌다.²⁹⁾ 국내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GI 상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바 있다.³⁰⁾

무역정책 차원에서도 GI는 단순한 품질인증 이상의 전략 자산으로 기능한다. 즉, 모방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추가적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EU의 FTA 전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이다. 협상 과정에서 EU는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던 일본을 상대로, 농식품 GI 보호를 주요 교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일본은 약 200여 건의 EU GI를 자국 내에서 보호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EU는 농식품 수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³¹⁾ 즉, EU는 GI를 자국 농업의 보호막이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업·농업 간의 불균형을 상호 보완하는 구조적 교환을 이끌어낸 것이다.

2023년 기준 EU에는 3,500개 이상의 GI가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제품은 전체 농식품 수출의 약 15%를 차지한다.³²⁾ 이러한 방대한 GI 인프라는 EU가 이를 통상 협상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인 동시에, 세계 각국이 자국 특산품의 GI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개발·육성하는 데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3.1.2. 한국의 경험

한국에서 GI 제도는 19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특정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후 「상표법」(2004)과 「부정경쟁방지법」(2005)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체계 내로 편입되었으나, 제도 운영은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농정 부처 중심에 머물러, 통상정책적 활용으

27) Giovanni Belletti & Andrea Marescotti, "Origin product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rural development", Edit. by Elizabeth Barham & Bertil Sylvander, *Labels of Origin for Food: Local Development, Global Recognition*, CABI, 2011, pp. 75-91.

28) 우전(雨前)과 세작(細雀)은 한국 전통 녹차의 등급 체계로, 채엽 시기와 찻잎의 크기에 따라 구분된다. 우전은 곡우(穀雨, 4월 20일경) 이전에 채엽한 어린잎으로 만든 최고급 녹차이며, 세작은 우전 다음 시기에 채엽한 작은 잎으로 만든 녹차로 '작설차(雀舌茶)'라고도 불린다. 이외에도 중작(中雀), 대작(大雀) 등의 등급이 있다.

29) 임지선, "'보성' 이름만으로도 '최고 녹차' 명성·지리적 표시제 1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001101747495>>, 검색일: 2026. 1. 5; 형민우, 「보성군, 지리적 표시 1호 '보성녹차' 품질관리 평가», 연합뉴스, 2023. 11. 15자.

30) 조정은 외 2인,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15권 제4호(2009), 166-167면.

31) Paul Nadeau, "Cars for Cheese? A Look at the EU-Japan EPA", *Tokyo Review*, <<https://www.tokyoreview.net/2019/02/cars-for-cheese-a-look-at-the-eu-japan-epa/>>, 검색일: 2026. 1. 5.

32) European Commission, "Geographical Indications - a European treasure worth €75 billion",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683>, 검색일: 2026. 1. 5.

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변화한 계기는 2007년 개시된 한-EU FTA 협상이었다. EU는 협상 초기부터 GI 보호를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특히 협정 부속서에 구체적인 보호 명단을 삽입하는 ‘목록 방식(list-based protection)’을 제안하였다. 당시 한국은 GI를 주요 통상 의제로 다룬 경험과 제도적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 초기부터 대응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EU가 제시한 보호 명단에는 ‘삼페인’, ‘파르마 햄’ 등 국내에서 사실상 보통명칭처럼 통용되던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인식 혼란과 기존 상표권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한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 나서 한-EU FTA의 GI 조항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한 사실은 GI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양자 협상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과정을 거쳐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EU 162개, 한국 64개의 GI를 상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동 협정은 정기적인 GI 작업반 운영을 통한 목록의 추가·삭제와 운영 정보 교환 등을 규정함으로써 GI를 단발성 교환 품목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리·갱신되는 ‘살아 있는 협상 대상’으로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협정 발효 이후에도 보호 대상 목록은 꾸준히 확대되어, 2024년 현재 EU 206개, 한국 105개의 GI가 상호 보호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초기 대비 약 64%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EU의 증가율(약 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보호 대상 규모에서는 여전히 약 2:1의 격차가 존재하며, 보호 품목의 구성 측면에서도 EU가 와인·치즈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다수 포함하는 반면, 한국은 1차 농산물에 편중되어 있어, 양적 격차와 더불어 질적 차이 역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³³⁾

전반적으로 한-EU FTA에서의 한국 경험은 GI가 국제 협상에서 실질적인 교환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보호 대상의 수적 비대칭은 국내 GI 제도의 축적과 활용 수준이 아직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향후 GI를 외교·통상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 역시 분명히 드러낸다.

3.2. 문화적 차원

3.2.1. GI의 문화적 의미

GI는 WTO TRIPS 협정에서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보호 대상과 기능은 단순한 상업적 권리 부여에 한정되지 않는다. GI는 특정 상품의 품질과 명성을 지리적 기원과 결부시켜 보호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축적된 생산 방식과 전통,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에서 GI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를 넘어, 문화적 기원과 정통성을 제도적으로 표지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GI 보호는 개별 생산자의 사적 이익을 넘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전통지식과 생산 관행을 집합적으로 관리·보존하는 효과를 지닌다. 특정 지역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식품 제조법, 농업 기술, 공예 방식 등은 단순한 기술적 노하우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자연환경이 결합된 문화적 자산이다. GI는 이러한 요소들을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화 과정에서 소멸되기 쉬운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는 세계화가 초래한 식문화와 생산양식의 균질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량생산과 글로벌 유통 체계 속에서 특정 지역의 전통

33) 엄태민, “한-EU FTA의 지리적표시 목록 추가협상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2020), 192면, 202-204면.

상품은 모방과 혼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문화적 출처와 맥락은 쉽게 희석된다. GI 제도는 특정 명칭의 사용을 생산지와 생산 방식에 결부시킴으로써, 문화적 기원에 대한 공적 기준을 설정하고, 무분별한 차용이나 왜곡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GI의 문화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고 있다. WIPO는 GI를 지역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면서도,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및 전통문화표현(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보호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³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GI가 지역 농식품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농촌 빈곤 완화, 전통 농법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³⁵⁾ 유네스코(UNESCO) 또한 GI가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보호협약의 맥락에서, 전통 기술의 세대 간 전승과 문화경관 보존을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³⁶⁾

요컨대 GI의 문화적 의미는 문화적 가치가 단순한 상징이나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법적 보호와 제도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는 GI가 경제적 인증 제도를 넘어, 특정 문화의 기원과 정통성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식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2. 한국의 경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I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유산과 생산 전통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성격은 국가 간 문화 기원과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국의 김치는 이러한 GI의 문화적·규범적 기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치는 한국인의 일상과 공동체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발효음식이자, 국가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 식문화 자산이다.³⁷⁾ 그러나 바로 그 상징성이 국제적 문화 기원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 한국 정부가 문화적 정통성 보호를 위해 GI를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김치를 둘러싼 논쟁은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이 ‘기무치(kimuchi)’를 자국 식문화로 홍보하며,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알려지면서 한-일 간 “김치 종주국” 논쟁이 촉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본식 김치가 한국 김치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한국 식 배추김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일단락되었다.³⁸⁾ 다만 이는 제조법과 위생 기준을 확정한 기술적 표준에 불과했으며, 김치의 문화적 기원과 정통성에 관한 논쟁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 새로운 논쟁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중국 일부 학계와 언론은 쓰

34)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Geographical Indications: An Introduction*, WIPO, 2017, pp. 7, 15, 18-19.

35) Emilie Vandecandelaere et al., *Linking People, Places and Products: A guide for promoting quality linked to geographical origin and sustainable geographical indications*, Second edi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SINER-GI, 2010, pp. 19-22.

36) UNESCO, “Eighteen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https://ich.unesco.org/en/18com>>, 검색일: 2026. 1. 5.

37)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 및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김치라는 답변이 일본 90.7%, 대만 7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기환 외 2인,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대한 주요 수출시장 소비자 의향 및 효과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34권 제2호(2019), 172면.

38) 천예선, “[위크엔드] 25년 묵은···김치·기무치 ‘원조전쟁’”,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670775>>, 검색일: 2026. 1. 5.

환 지역의 발효채소인 파오차이(pao cai)를 김치의 원형으로 주장하였고, 2020년 중국이 파오차이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면서 종주국 논쟁은 다시 확산되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파오차이와 김치는 별개의 식품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중국 내 언론과 온라인 담론이 '김치의 중국 기원설'을 확산시키며 논쟁은 문화 주권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김치의 정통성을 기술 규범이 아닌 문화·기원 규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김치 품질 고도화와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였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김치의 GI 등록을 포함시켰다. 이후 「김치산업진흥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21년 '대한민국 김치' 명칭이 GI로 공식 등록되었다.³⁹⁾ 이는 한국 전통식품의 문화적 기원을 제도적으로 공인한 사례로, 향후 문화 정체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평가된다.⁴⁰⁾

한편 한식의 세계화와 K-푸드 확산으로 김치 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4년 김치 수출액은 약 6,36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수지는 오히려 2,269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는데,⁴¹⁾ 이는 김치가 문화적 상징성과 인지도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중국산 저가 제품의 확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적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호 기반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소비자 조사 결과는 GI 제도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본 소비자의 42.8%, 대만 소비자의 78.7%가 GI 표시가 부착된 한국산 김치에 대해 구매 의향을 보였으며, 각각 현재보다 7.8%, 25.1%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일본 소비자는 '한국산 원료의 정통성'을, 대만 소비자는 '한국 정부 인증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신뢰 요인으로 꼽았다.⁴²⁾ 이는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산 김치의 정통성과 품질을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호 부재의 문제는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농식품뿐만 아니라 공예품·복식 등 전통 문화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Demon Hunters」의 흥행은 한국 전통문화를 글로벌 대중문화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자개함·노리개·매듭공예 등 전통 수공예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의미하게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주목이 국내 장인이나 공예 산업의 실질적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전통 제작방식을 유지하는 생산자들이 급증한 수요에 단기간 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저가 상품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였고, 그 결과 한국 전통문화 이미지의 왜곡과 정통성 훼손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⁴³⁾

이 같은 사례들은 한국 문화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정통성 보호의 과제를 보여 주며, 문화자산의 신뢰를 공적으로 보증하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9) 문채석, "김치, 중국서 '파오차이' 둔갑...국가명 지리적표시제 속도",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1813591214352>>, 검색일: 2026. 1. 5.

40) 박선희,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Kimchi Case: Lessons from the European System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entered on the Feta Cheese Conflict", 「유럽연구」, 제40권 제4호(2022), 5-6면.

41) 김동화, "김치 수입액 '역대 최대'...전년 대비 약 17% 늘어",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1245>>, 검색일: 2026. 1. 5.

42) 박기환 외 2인,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대한 주요 수출시장 소비자 의향 및 효과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34권 제2호(2019), 168-175면.

43) 김혜미·김세연, "'나전칠기·노리개 살래요'... '케데헌' 열풍에 인사동 복식",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5126642298480&mediaCodeNo=257>>, 검색일: 2026. 1. 5.

3.3. 규범적 차원

3.3.1. GI의 규범적 의미

규범권력은 국제사회에서 '무엇이 정당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규정하고, 그 기준을 확산시켜 타국의 제도와 행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⁴⁴⁾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달리, 제도·가치·법 등을 매개로 국제 질서를 형성·유지하는 힘으로, EU는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 등과 더불어 GI 보호체계를 자국 규범정치(regulatory politics)의 일부로 발전시켜 왔다.

EU에게 GI는 단순한 상표권이나 품질인증 제도가 아니라, '정통성과 품질에 대한 유럽적 가치'를 세계시장의 기준으로 제도화하는 규범 장치로 기능한다.⁴⁵⁾ TRIPS 협정 협상 과정에서 EU는 자국의 보호 모델을 국제 기준으로 정립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고, TRIPS 협상이 교착된 이후에는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른바 TRIPS-plus 보호 모델을 확산시켜 왔다. 이러한 접근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품질과 진정성의 판단 기준을 유럽 중심의 규범으로 설정함으로써 외국 생산자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규범적 통상전략으로 작동해 왔다.⁴⁶⁾

3.3.2. 한국의 경험

이러한 EU 중심의 GI 규범 확산은 이를 수용해야 했던 국가들에게 각기 다른 제도적 선택을 요구해 왔다. 한국은 EU와 미국이라는 상이한 GI 보호 모델과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일한 규범 노선을 형성하기보다는 협상 상대와 사안에 따라 제도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서는 EU식 목록 보호(list-based protection)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반면,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서는 미국의 상표 중심 접근을 반영하여 보통명칭 예외와 상표권 우선 원칙을 유지하였다. 즉 한국은 공적 인증을 중심으로 한 EU의 공공 중심 GI 보호체계와 상표권과 경쟁 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상표 기반 시장 중심 체계 사이에서 협상별로 수용 범위를 조정하는 선택적 실용주의를 채택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 협상에서 제도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상 타결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단기적 유연성을 제공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GI 보호의 목적과 가치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규범 입장을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 GI 규범 논의에서 자국의 이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규범을 수용·조정하는 위치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장기적 전략성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한계는 국내 GI 거버넌스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한국의 GI 보호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공공 인증 기반의 sui generis 제도, 지식재산처가 담당하는 단체표장·증명표장 중심의 상표제도, 그리고 국세청이 운영하는 주류 원산지 표시 및 품질인증제도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분산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공공 인증 체계는 EU 모델과 유사하게 품질과 원산지 보증을 중시하는 반면, 상표법 기반 보호는 미국식 접근과 같이 시장 경쟁과 브랜드 식별력을 강조한다.

이렇듯 부처별로 상이한 규범 철학과 정책 목표를 전제로 한 제도들이 병존하면서 GI의 등록·

44) Ian Manners,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40 No.2(2002), pp. 239-240.

45) Sophie Meunier & Kalypso Nicolaïdis, "The European Union as a conflicted trade power",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Vol.13 No.6(2006), pp.906-925.

46) Kal Raustiala & Stephen R. Munzer, "The Global Struggle over Geographic Indic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8 No.2(2007), pp.337-365.

표시·집행 기준과 책임이 분산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메시지가 일관되게 조율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선행연구 역시 이러한 분절적 운영이 행정 비효율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 GI 제도의 전략적 응집력을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한다.⁴⁷⁾ 결과적으로 규범 체계의 혼합과 거버넌스 분절은 한국이 국제 무역협상에서 정합성 있는 규범 메시지를 구축하는 데 한계를 노출시키며, 이는 GI를 전략적 협상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GI를 경제·문화·규범이 교차하는 전략적 제도로 개념화하고, 국제 GI 질서의 구조와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TRIPS 체제 이후 GI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EU의 sui generis 확산 전략, 미국의 상표법 기반 견제, 신흥국의 적극적 활용이 경쟁하는 다극 구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한-EU FTA와 김치 논쟁을 계기로 GI의 다차원적 잠재력을 인식하게 되었으나,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체계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첫째, GI를 전략 자산으로 사전에 기획·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부재하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GI를 주요 통상 의제로 다루게 되었으나, 김치와 같이 문화적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는 대표적 자산들이 협상 단계에서 충분히 발굴·반영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김치 종주국 논쟁이나 전통 공예품 사례에서 보듯이, 대중적 관심과 분쟁 가능성이 가시화된 이후에야 사후적으로 보호 조치가 추진되면서, 문화적 성공이 안정적인 해외 보호나 지속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어 왔다. 이는 GI를 선제적으로 기획·활용하지 못한 점이 문화적 정통성 보호는 물론, 경제적 기회 확보에도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전략적 기획의 부재는 부처 간 분절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GI 정책은 국제 규범 경쟁 속에서 일관된 전략 노선을 구축하기보다는 협상 상대와 사안에 따라 제도 요소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선택의 누적은 단기적인 협상 타결이나 제도 수용에는 유연성을 제공하였으나, GI를 대외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정책 전반의 전략적 응집력과 연속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위와 같은 한계들은 한국의 GI 정책이 문화적 정통성 보호, 법적 권리 확보, 경제적 활용이라는 세 요소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GI를 단일 차원의 정책 도구가 아닌, 경제, 문화, 지식재산 영역을 연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일관된 정책 프레임 속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GI 보호 대상을 해외 시장에서의 분쟁 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GI 정책은 그간 분쟁이나 논쟁이 가시화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글로벌 콘텐츠 확산과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문화자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정통성 논쟁이나 모조품 확산의 위험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문화

47) 번서영·이종호,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 『산업재산권』, 제79호(2024), 492-495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전략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81-84면; (사)대한상표협회,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사)대한상표협회, 2011, 251-295면.

적 상징성과 상업적 잠재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자산을 사전에 선별하고 대응 수단을 배치하는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모방 위험도, 글로벌 수요 확대 가능성, 문화적 파급력, 기존 상표권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GI 보호 후보군을 사전에 도출하고, 필요시 저작권, 디자인권, 원산지 표시 규제 등 보완적 지식재산 및 통상 수단을 병행하는 다층적 보호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에 한정되지 않고 전통 공예품 등 비농산물 제품으로까지 GI 보호 범위를 확장해 온 EU와 중국의 제도 운용 사례는, 보호 대상 발굴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전통 공예품과 문화 상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제로 하되 문화자산 전반을 잠재적 보호 후보군으로 검토하는 접근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GI를 국내 품질 인증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과 경제적 기회에 대비한 정책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적 인정을 법적 보호와 경제적 성과로 전환하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GI는 특정 상품의 문화적 기원과 정통성을 공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나, 이러한 문화적 인정이 자동적으로 법적 보호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김치 사례에서 보듯, 문화적 상징성이 높더라도 제도적 연계가 부재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보호나 프리미엄 가격 형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문화적 인정-법적 보호-경제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연결 고리를 정책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등과 같은 문화유산 인증 등재 제도와 GI 등록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문화적 정당성 확보와 지식재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대외 차원에서는 이러한 국내 제도 강화를 기반으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협의 과정에서 GI 상호 보호를 전략적 의제로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의 법적 보호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GI 인증 제품에 대한 수출 지원, 해외 홍보, 유통 채널 연계 등 경제적 활용 지원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문화적 신뢰가 국내외 법적 보호를 거쳐 프리미엄 시장 형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GI의 대외적 활용과 보호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법적 조율 메커니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GI 보호체계의 분절은 단순한 운영상의 미비라기보다,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정책 목적을 지닌 제도들이 장기간 병렬적으로 축적되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공공 인증형 제도는 품질 관리와 원산지 보증이라는 농정적 목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상표법」상 단체표장·증명표장 제도는 사권 설정과 시장에서의 식별 기능을 중시하는 지식재산권 체계에 기반한다. 또한 「주세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품질 관리 제도는 조세 행정과 유통 관리라는 별도의 정책 맥락을 갖는다. 이러한 분업적 구조는 제도 간 중복 및 조정 비용을 야기해 왔다는 비판과 함께, 각 부처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집행 역량이라는 장점 또한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은 분절 구조의 전면적 통합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각 부처의 분업 구조를 인정된 상태에서 대외 국면을 중심으로 조율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대외 국면에서 GI는 통상 협상·국제 등록·분쟁 대응 등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지식재산 의제로

다루어진다. 이에 따라 이러한 대외 조율을 담당할 기관은 국제 지식재산 규범과 권리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적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지식재산청은 대외 국면에서의 GI 대응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적합성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주세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한 GI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통상 협상, 해외 등록, 분쟁 대응 등 대외 국면에 한정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컨대 해외 보호 가치와 국제적 파급력을 고려한 GI 후보군의 발굴·선별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에서 지식재산청이 조정·총괄 기능을 수행하되, 품질 기준과 원산지 요건 등 실체적 판단은 소관 부처가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을 제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 차원의 대외 대응 창구를 지식재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상 협상 과정에서의 기술적 대응, 해외 GI 등록 절차의 조정, 분쟁 발생 시의 권리적 대응 등에 있어 신속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율 원칙을 포괄하는 「지리적표시 기본법」(가칭)과 같은 통합 입법을 통해, 부처별 권한과 책임, 협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정합성의 확보는 국내 발굴 단계에서부터 해외 등록, 국제 홍보에 이르기까지 GI 관리 전 과정을 대외 국면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며, GI를 개별 인증 상품의 집합이 아니라, 국제적 보호와 전략적 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종합하면, 한국의 GI 정책은 제도적 축적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방식에서는 여전히 사후 대응적·분절적 경로에 머물러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개별 사례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GI를 문화적 정당성, 법적 보호, 경제적 활용이 결합된 전략 자산으로 인식·관리하지 못한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들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정책 수단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떤 관점에서 재배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즉, GI 보호 대상의 선제적 기획, 제도 간 연계 강화, 대외 국면 중심의 법적 조율은 각각 독립된 처방이 아니라, GI를 국제 환경 속에서 일관되게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GI 정책은 개별 품목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문화자산의 국제적 보호와 활용을 장기적으로 설계·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GI를 문화적 정통성 방어 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 신뢰와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정책 자산으로 정착시키는 과정이며, 한국 문화의 지속가능한 국제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 활용

Anthropic. (2025), Claude (Sonnet 4.5, 2025. 11. 24.), [대형언어모델(LLM)], <https://claude.ai/>, 참고문헌 정리, 오타자 교정 및 영문 초록 검수 작업에 AI 도구를 활용하였음. 생성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 사실 확인 및 수정을 거쳐 본 논문에 수록함.

참고문헌

단행본(서양)

Emilie Vandecandelaere et al., *Linking People, Places and Products: A guide for promoting quality linked to geographical origin and sustainable geographical indications*, Second edi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 SINER-GI, 2010.

Giovanni Belletti & Andrea Marescotti, "Origin product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rural development", Edit. by Elizabeth Barham & Bertil Sylvander, *Labels of Origin for Food: Local Development, Global Recognition*, CABI, 201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Geographical Indications: An Introduction*, WIP O, 2017.

학술지(국내 및 동양)

박기환 외 2인, "김치 지리적표시제 도입에 대한 주요 수출시장 소비자 의향 및 효과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34권 제2호(2019).

박선희,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Kimchi Case: Lessons from the European System of Geographical Indications Centered on the Feta Cheese Conflict", 「유럽연구」, 제40권 제4호(2022).

변서영·이종호, "글로벌 시대에 대응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 「산업재산권」, 제79호(2024).

엄태민, "한-EU FTA의 지리적표시 목록 추가협상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3권 제4호(2020).

조정은 외 2인,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15권 제4호(2009).

학술지(서양)

Chuthaporn Ngokkuen & Ulrike Grot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Protect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ailand", *Asia-Pacific Development Journal*, Vol.19 No.2(2012).

Cleiton Braga Saldanha et al., "Overview of Brazilian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he Experience of Cachaça Indications of Procedure",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16 No.3(2023).

Delphine Marie-Vivien,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ASEAN countries: Convergences and challenges to awakening sleeping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Vol.23 No.3-4(2020).

G. E. Evans & Michael Blakeney,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fter Doha: Quo Vadi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9 No.3(2006).

Ian Manners,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40 No.2(2002).

Kal Raustiala & Stephen R. Munzer, "The Global Struggle over Geographic Indic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8 No.2(2007).

Sophie Meunier & Kalypso Nicolaidis, "The European Union as a conflicted trade power",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Vol.13 No.6(2006).

Xiomara F. Quiñones-Ruiz et al., "Can origin labels re-shape relationships along international supply chains? - The case of Café de Colombia",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ommons*, Vol.9 No.1(2015).

판례

Interprofession du Gruyère v. U.S. Dairy Export Council, 61 F.4th 407 (4th Cir. 2023).

신문기사

형민우, 「보성군, 지리적 표시 1호 '보성녹차' 품질관리 평가」, 연합뉴스, 2023. 11. 15자.

인터넷 자료

- 김동화, “김치 수입액 ‘역대 최대’…전년 대비 약 17% 늘어”,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11245>>, 검색일: 2026. 1. 5.
- 김혜미·김세연, ““나전칠기·노리개 살래요”…‘케데헌’ 열풍에 인사동 복적”,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35126642298480&mediaCodeNo=257>>, 검색일: 2026. 1. 5.
- 문채석, “김치, 중국서 ‘파오차이’ 둔갑…국가명 지리적표시제 속도”,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31813591214352>>, 검색일: 2026. 1. 5.
- 임지선, “‘보성’ 이름만으로도 ‘최고 녹차’ 명성…지리적 표시제 1호”,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1001101747495>>, 검색일: 2026. 1. 5.
- 천예선, “[위크엔드] 25년 묵은…김치·기무치 ‘원조전쟁’”,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670775>>, 검색일: 2026. 1. 5.
- A Subramani, “GI tag: TN trails Karnataka with 18 products”, The Times of Ind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city/chennai/GI-tag-TN-trails-Karnataka-with-18-products/article-show/6458268.cms>>, 검색일: 2026. 1. 5.
- 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CCFN), “About Us”, CCFN, <<https://www.commonfoodnames.com/about-us/>>, 검색일: 2026. 1. 5.
- Consortium for Common Food Names (CCFN), “Bipartisan Group of Lawmakers Reintroduce Bill to Protect Common Names”, CCFN, <<https://www.commonfoodnames.com/bipartisan-group-of-lawmakers-reintroduce-bill-to-protect-common-names/>>, 검색일: 2026. 1. 5.
- European Commission, “Geographical Indications – a European treasure worth €75 billion”,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683>, 검색일: 2026. 1. 5.
- European Commission, “Negotiations and agreements”, European Commission, <https://policy.trade.ec.europa.eu/eu-trade-relationships-country-and-region/negotiations-and-agreements_en>, 검색일: 2026. 1. 5.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Regulation (EU) 2023/2411 of 18 October 2023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craft and industrial produc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2017/1001 and (EU) 2019/1753”,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2023/2411 (27 October 2023),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2411/oj>>, 검색일: 2026. 1. 5.
- John A Clarke, “Crossing the River by Feeling the Stones—The China-EU Agreement on Geographical Indications”, Modern Diplomacy, <<https://moderndiplomacy.eu/2024/07/11/crossing-the-river-by-feeling-the-stones-the-future-of-the-china-eu-agreement-on-geographical-indications/>>, 검색일: 2026. 1. 5.
-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NMPF), “Landmark Agreement Secures U.S. Exporters’ Rights to Use Common Names in Chilean Market”, NMPF, <<https://www.nmpf.org/landmark-agreement-secures-u-s-exporters-rights-to-use-common-names-in-chilean-market/>>, 검색일: 2026. 1. 5.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Article 20.19 (Geographical Indications) (2020)”, USTR,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agreements/FTA/USMCA/Text/20-Intellectual-Property-Rights.pdf>>, 검색일: 2026. 1. 5.
- Paul Nadeau, “Cars for Cheese? A Look at the EU-Japan EPA”, Tokyo Review, <<https://www.tokyoreview.net/2019/02/cars-for-cheese-a-look-at-the-eu-japan-epa/>>, 검색일: 2026. 1. 5.
- People’s Army Newspaper Online, “Vietnamese coffee brand promoted in world market”, People’s Army Newspaper, <<https://en.qdnd.vn/economy/special-reports/vietnamese-coffee-brand-promoted-in-world-market-549916>>, 검색일: 2026. 1. 5.

- UNESCO, "Eighteen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https://ich.unesco.org/en/18com>>, 검색일: 2026. 1. 5.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Section 3: Geographical Indications (Arts. 22-24), WTO,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27-trips_04b_e.htm>, 검색일: 2026. 1. 5.
- Xinhua News Agency, "China issues GI protection, application plan for 2021-2025 period", Xinhua, <<https://english.news.cn/20220121/f382af0c9ee4462b9b6d1c56963678e3/c.html>>, 검색일: 2026. 1. 5.
- Zhigang Zhu & Paul Ranjard, "CNIPA publishes sorely needed draft rules on protection of GI products", IAM Media, <<https://www.iam-media.com/article/cnipa-publishes-sorely-needed-draft-rules-protection-of-gi-products>>, 검색일: 2026. 1. 5.

연구보고서

- 김영모·전정화, "지재권 국제논의 및 통상협상 지원 기반 마련 연구 - 2024「유전자원과 IP조약」 및 GI 보호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 (사)대한상표협회, "국내 지리적 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사)대한상표협회, 2011.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전략성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tudy on economic value of EU quality schemes, geographical indications (GI) and traditional specialities guaranteed (TS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1.
-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24", WIPO, 2024.